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73
----------	-------

발의연월일 : 2025. 7. 4.

발 의 자 : 박충권 · 서천호 · 김정재
김성원 · 엄태영 · 조지연
윤상현 · 이인선 · 김태호
김대식 · 정동만 · 김장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혁신은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전폭적인 국가적 투자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동안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그 지원 규모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수행자별로 분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단기적인 성과를 낼 것을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중요하고 시급한 연구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연구 현장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집

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의 3부총리 체제가 필요함.

이에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및”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제22조 중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국무회의) ① (생략)	제12조(국무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u>2명</u> 을 둔다.	제19조(부총리) ① ----- ----- ----- <u>3명</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u>교육부장관</u> 이 각각 겸임한다.	③ ----- <u>교육부장관</u> 및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⑥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에 관하여 국무총</u>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u>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u>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u>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u>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 ----- ----- -----<u>교</u> <u>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u>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u> <u>임하는 부총리</u>----- ----- ----- ----- ----- -----.
---	--